

식물신品种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109
----------	------

발의연월일 : 2017. 3. 10.

발의자 : 김도읍 · 이만희 · 이현승
정태옥 · 지상욱 · 이명수
김성원 · 김정재 · 박명재
이채익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품종보호권 침해와 관련된 분쟁조정 시 ‘재배시험 등이 필요한 경우’를 조정기간 연장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분쟁과 관련성이 미약한 부분까지도 연장 사유에 포함될 소지가 있는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재배시험’이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연장 사유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19조제4항).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4항 단서 중 “재배시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을 “재배시험 이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9조(분쟁의 조정) ① ~ ③ (생략)</p> <p>④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종자위원회는 3명의 위원으로 조정부를 구성할 수 있으며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한다.</p> <p>다만, <u>재배시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u>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119조(분쟁의 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p> <p>-----</p> <p>-----</p> <p>-----.</p> <p>-----<u>재배시험이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u></p> <p>-----</p> <p>--.</p>
⑤ ~ ⑦ (생략)	⑤ ~ ⑦ (현행과 같음)